



한국농업, 세계를 꿈꾸다.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200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농업·농촌·식품정책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편집자 주〉

새해 달라지는 농업·농촌·식품정책

한국농업, 세계를 꿈꾸다.

2008년에는

- 작년에 거둔 성과를 토대로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 개방에 대비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직접 지불제 확충 등으로 농가의 경영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농업연구개발(R&D) 투자효율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은 농촌주민과 도시민들이 더불어 살고 편히 쉴 수 있으며, 전통문화가 보존·전수되는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 한국농업은 이제 세계로 가야 합니다.

1. 농업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 농지규모, 가축 사육두수 등 농가별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로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정보는 직접지불제, 농가단위 소득 인정지원,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나. 영농 규모화를 지원합니다.

- 밭 전업농에도 농지규모화 사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1.0ha 이상의 밭을 소유한 60세 이하의 밭 전업농 육성대상자이며, 밭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55세 이하의 농업인도 경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매입자금 융자지원 단가 중 10%를 농가가 부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폐지하여 농가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 농업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8년 8월 4일)되어 농업유전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유전자원의 국내외 분양, 국외반출시 책임기관(농업유전자연구소, 산림종자관리원)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농업유전자원이란 :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으로 종자, 영양제, 화분, 세포수, 유전자 및 정액, 버섯종균 등을 말함.

2. 새로운 힘이 농업을 발전시킵니다.

가. 식품산업을 본격 육성합니다.

-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통

계체계 정비, 품질인증제 확충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2014년까지 전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나. 농식품 수출을 2012년까지 40억 달러로 늘립니다.

- 김치, 인삼, 파프리카와 같은 대표 상품을 집중 육성하고, 농식품 수출기업과 브랜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및 우수 한식당 모델 개발, 한식 표준조리법 보급 등 한식 세계화 사업을 통해 우리 음식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147개 재외공관이 수출전 초기지가 되어 우리 농산물과 식품이 잘 팔리도록 지원합니다.

다. 농립 연구개발(R&D)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립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립니다.
 - 농림부 연구개발예산 : 2007년 636억원 ⇒ 2008년 1,051억원(65% 증가)
- 농업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민간 부분의 참여확대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도 높일 것입니다.

3. 농촌의 활력을 키웁니다.

가. 규제 완화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합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르자 지정제도,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 등을 도입하여 더 많은 도시민이 농촌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 음식제공 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합니다.
- 낙농체험관광목장을 선정하여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개선비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무이자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농어촌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기존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범위를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인 농촌주택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나.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개발을 추진합니다.

- 2007년 농림부로 이관된 오지종합개발사업, 신활력 사업을 기존사업과 통합하여 시·군 등 지역단위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활력사업 + 향토산업육성사업 + 특화품목사업 ⇒ 농촌활력증진사업
 - 오지농합개발사업 + 정주권개발사업 ⇒ 농촌생활환경장비사업
-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리를 3.45%에서 3%로 낮춥니다.

다. 경관보전직불 대상을 확대합니다.

-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8개 작물로 한정되었던 경관보전 직불대상을 경관용 초화류(꽃이 피는 초본식물) 전체로 확대합니다.
 - 최소재배면적은 1ha에서 0.5ha로 완화합니다.

3. 최고의 품질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가.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지원합니다.

- 기존 온실단지의 생산시설, 에너지 절감·유통·안전관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 단지 당 지원규모(예시) : 시설현대화 70억원 / 기존 단지 증·개축 31억원
- 2013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규모화 된 조직 96곳을 선정하여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나. “맛이 보이는” 양곡표시제를 도입합니다.

- 2008년 2월부터 양곡포장에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쌀 품질정보를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합니다.
- 소비자가 고품질 쌀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이미 제작된 양곡포장재는 2008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합니다.

- 2008년 6월 21일부터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은 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도 표기해야 합니다.
- 2008년 12월 하순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도 표기해야 합니다.
-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 방법의 개발, 적용 등으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4. 축산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2008년에 모두 1,029억원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과 낙후된 사육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 2008년에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분야 515곳을 지원하며, 2017년까지 총 5,150곳을 지원합니다.

나. 2008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 폐사, 수입·수출, 양도·양수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된 소는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 귀표가 부착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 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이력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동물보호제도를 강화합니다.

- 늘고 있는 반려동물(애완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동물(버리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월말부터 시행됩니다.
- 시장·군수는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장치 등을 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농 립 부
2007년 12월

(1)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농림부 농업정책국 소득지원팀(☎ 02-500-211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규〉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서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

〈내용해설〉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보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2008년도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등록제를 통해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농림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추후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등록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채소특작과
(☎ 02-500-1866-7)

〈FTA 지원법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규〉	수입개방 폭 확대에 대비 수출잠재력이 높은 원예 전문단지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

〈내용해설〉

- 2008년부터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원예(채소·화훼)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주도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 ※ 조직 75개소 육성(2008~2017년 : 시설현대화 50개소, 단지 증·개축 25개소)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고품질 생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기존 첨단온실 증·개축을 지원하게 됩니다.
 - 2008 예산 : 522억원(보조 130억원, 용자 392억원), 사업량 13개소(시설현대화 8개소, 단지 증·개축 5개소)
 - 지원조건 : 국고 20%, 용자 60%, 자부담 20%(※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대체 지원 가능)
 - 지원단가(10ha단지 기준, 소요사업비) : 시설현대화 70억원/단지(단년 사업), 단지 증·개축 31억원/단지(1년차 60%, 2년차 40%)
-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은 2017년까지 75개소를 육성 지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원예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가가 기대됩니다.

(3)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2-500-1995)

〈한미 FTA 보완대책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

〈내용해설〉

- 2008년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급이·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자금을 지원합니다.
 - 2008년도 사업비 : 128,660백만원(보조 25,732, 용자 77,196, 자담 25,732)
 - 지원조건 : 보조 20%, 용자 60%, 자부담 20%
 - 2008년도 사업량 : 총 515개소(한우 200, 양돈 150, 양계 75, 오리 10, 낙농 80)
 - 개소 당 지원한도액 : 한(육)우 200백만원, 양돈 900, 산란계 1,400, 육계 700, 오리 700, 낙농 200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2017년까지 5,150개소를 지원하게 되며,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대상에 발 포함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672)

〈농림사업시행지침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대상농지를 논에 한정 - 다만, 제주도에 한해서 밭 지원 가능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대상 농지를 논 중심에서 밭까지 확대

〈내용해설〉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대상농지를 논 중심에서 밭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 그동안에는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 논을 대

상으로 규모화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부터는 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밭 전업농가도 지원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08년도는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700ha, 341억원)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 자격은 밭 경영규모가 1.0ha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나 55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신규선정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 지원조건
 - 밭 매매 : 지원 단가 35천원/3.3㎡, 상환기간 15~30년, 연리 2%
 - 밭 임대차 : 상환기간 5~10년, 무이자

(5) 양곡표시제도 개선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유통과(☎ 02-500-2117)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별표7 : 2008. 2. 4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의무표시사항 - ① 품목, ② 생산년도, ③ 중량, ④ 품종, ⑤ 원산지표시, ⑥ 도정연월일, ⑦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성명)·전화번호 ○ 권장표시사항 - ① 등급	○ 의무표시사항중 원산지표시를 삭제 - ① 품목, ② 생산년도, ③ 중량, ④ 품종, ⑤ 도정연월일, ⑥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성명)·전화번호 ※ 단,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됨 ○ 권장표시사항으로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쌀 품질 표시를 추가 - ① 품위, ② 품질(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

〈내용해설〉

-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파워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2008. 2. 4부터 시행).

- 현행 양곡표시사항 중 쌀 품질과 관련한 정보는 외관상의 등급 밖에 없어 소비자가 쌀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맛있는 쌀」에 대한 표시항목과 기준을 설정하여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권장표시사항 중 외관상의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품질”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품질” 표시항목은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생산비용 증가, 감정·계측의 신뢰성·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3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 또한, 양곡표시제도 개선에 따른 쌀 유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곡의 의무표시사항 중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됩니다.
- 앞으로 양곡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농산물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시하고, 위반 시 벌칙도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6)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 사업, 2008년 12월부터 시행

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물위생과 ☎ 02-500-1925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2008. 12.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참여 신청 브랜드·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 출생 신고, 이동 신고, 귀표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 자율적 시행 - 위반 시 : 법적 제재(벌금, 과태료 부과)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본 사업 시행 - 출생 신고, 이동 신고, 귀표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 법적으로 의무화 - 위반 시 : 법적 제재(벌금, 과태료 부과)

〈내용해설〉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법이 시행되면,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해당 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쇠고기에 농림부장관이 부여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동 법에서 정한 출생 등의 신고, 표시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소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구입한 쇠고기의 이력을 알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 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채소특작과
(☎ 02-500-1898)

〈인삼산업법 : 2008. 1. 14.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인삼류 제조 시 원산지표시 의무 규정이 없음.	○인삼류 제조 시 제조업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폐쇄 등의 영업권 처벌 등의 기준 마련 - 연근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용해설〉

- 인삼류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검사품·불합격품 유통 시 부당이득이 커 부정유통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중국산 홍삼(4년 근)을 600g 당 2만원에 구입하여 국산으로 판매 시 4~8 만원의 차액 발생
- 인삼류 제조업자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등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폐쇄 등의 영업권 처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근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마련하였습니다.
-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의 저가 인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 법률안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특례 부여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02-500-1955)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08년 7월 시행 예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지정제 도입 ○농촌마을의 기부 및 체험·봉사활동에 대한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 도입 ○농촌체험과 마을안내 등을 위한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제도 도입

〈내용해설〉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여 도농교류사업에 대한 제도적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도농교류촉진을 통한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2008년 중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마을단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서 ‘숙박’, ‘음식’ 제공시 「공중위생관리법」등 적용배제 및 특례부여로 규제를 완화하여 체험·휴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마을에 기부 또는 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및 농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해 “농촌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인들이 쉽고, 자유롭게 농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관광수입 증대 등의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범위가

총래 20만㎡에서 50만㎡로 확대된다.

(9) 시·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670)

〈농지법 시행령 : 2008상반기 시행 예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2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50ha까지 시·도지사에 위임

〈내용해설〉

■ 계획관리지역 농지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범위를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2008년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농업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 농지는 농지법상 시설물 제한이 없음

- 생산·보전관리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1만5천㎡ 이상 연립주택, 아파트 등 설치제한 등 행위제한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구분〉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

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10)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 등록제 등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02-500-1933)

〈동물보호법개정안 : 2008.1.27.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동물학대 : 벌금 20만원 이하	○동물학대 : 벌금 500만원 이하
○유기동물보호 : 보호기간 단축(동물 유기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유기동물보호 : 보호기간 단축(동물 유기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유기동물보호 조치기간 : 30일	○동물등록제 실시(대상 : 개)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가정에서 반려(伴獸)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음(미등록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는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 멍건은 입마개 등을 하여야 하고, 배설물이 생긴 때는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등록 -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미등록 등(100만원 이하 벌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설치 : 정부기관 등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미설치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명예감시관 임명

〈내용해설〉

■ 국민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대응하여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2008. 1.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대상 : 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 하였습니다.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1983.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

■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 금지되는 동물로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 조류 등이 포함된다.

- 구체적인 학대행위 경우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단,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소싸움의 경우는 제외)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시장·군수가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인식표(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부착, 안전장구 휴대(목줄 착용, 맹견의 입마개착용, 배설물수거용품)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동물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 운송 시 적합한 사료를 공급하고, 상해를 방지하여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화된 차량의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판매업자·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 7일간 공고,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소유권은 시·군·자치구에 속하게 된다.

○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감시관과 명예 감시관 위촉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의 동물학대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1) 농업유전자원의 국가관리 본격 추진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과
(☎ 02-500-1788)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 : 2008. 8. 3.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분양, 국외반출, 관리기관의 관리를 종자산업법, 축산법 등 개별법의 일부조항에 근거하여 시행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 유전자원의 국내외 분양, 국외반출, 관리기관지정 신청 시 책임기관(농업유전자원연구소, 산림종자관리원)의 승인이 나 신고 필요

〈내용해설〉

- 생명산업의 육성소재로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농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국가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내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유전자원의 주권화, 독점화 등의 국제적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책임기관(농업유전자원연구소, 산림종자관리원)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

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품종개발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을 고부가 가치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면적 제한 완화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670)

〈농지법 시행령 : 2008상반기 시행 예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 3천㎡까지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 1만㎡까지 허용

〈내용해설〉

- 한·미 FTA 등 농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촌 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허용면적을 3천㎡에서 1만㎡로 확대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이는 2007년 10월중 발표한 FTA 후속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농지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하여 2008년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 기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 및 허용면적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시설 등 : 3만㎡ 미만
 - 양어장·양식장, 수산물건조·보관 시설 등 어업용 시설 : 1만㎡ 미만
 -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등 : 3천㎡ 미만
 - 농업인주택 : 660㎡ 미만
 - 농산물창고 : 면적제한 없음

- 마을회관 등 기타 농업인 편의시설 : 1천㎡ 미만

(13)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폐지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672)

〈농림사업시행지침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농지매매사업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10% 자부담	○농지매매사업 지원 단가(3.3㎡당 논 30천원, 밭 35천원)에 포함된 10% 자부담 폐지하여 농가부담 경감

〈내용해설〉

- 농지매매사업 지원 상한에 포함된 자부담 10%를 폐지하였습니다.
 - 그동안 농지매매사업 과열방지책과 책임감 부여 목적으로 지원 단가 상한 범위 내에서 농업인들이 자기자금 1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자부담을 폐지하였습니다.
 - 자부담 폐지는 지원 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농가부담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 농지매매사업 지원대상은 경영규모가 1.5ha(밭 1.0ha)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하 전업농육성 대상자나 55세 이하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신규선정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 지원조건
 - 지원 단가 : 논 30천원/3.3㎡, 밭 35천원/3.3㎡
 - 상환조건 : 15~30년 균분상환, 연리 2%

(14)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관리범위 확대

농림부 농업정책국 협동조합과 ☎ 02-500-1699)

〈농림사업자금 이차보전규정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28조원에 이르는 농업정책자금(융자금)중 농특회계 융자금(3.7조원, 13%)에 한하여 전문관리기관(정책자금관리단)에 의한 사후관리 실시	○이차보전 대상자금(15.5조원, 55%)까지 정책자금관리단의 관리범위 확대 - 사후관리 강화로 정책자금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내용해설〉

-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농업정책자금(융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2004년)되었으며, 현재 농특회계 융자금 및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자금(융자금) 사후관리 강화로 정책자금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관리하던 농특회계 융자금 외에 이차보전 대상자금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관리단에서 2008년도부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관리범위 확대 : (현행) 농특회계 융자금 (3.7조원, 13%) → (2008년 추가) 이차보전 대상자금(15.5조원, 55%)

(15)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체계 개선

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 02-500-2172)

〈농림사업시행지침 : 2008년부터 시행〉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대상지 선정	○농림부에서 대상지 선정	○시·도지사가 대상지 선정
○지원작물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등 8종으로 규정	○작물범위 확대(초화류로서 시장·군수·구청장 판단)
○사업신청 최소면적	○최소면적 1ha, 마을 단위 3ha 이상 집 단화	○최소면적 0.5ha, 마을단위 2ha 이상 집단화
○사업관리	○관리부실 사업대상지는 경고조치	○관리부실 사업대상지는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 연도 선정 제외

〈내용해설〉

-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체계, 사업내용 및 사업 관리 등 시행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운영상의 애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 사업대상지 선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대상작물을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연, 자운영, 야생화 등 8개 작물에서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신청에 필요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최소 1ha, 마을단위 3ha → 최소 0.5ha, 마을단위 2ha)하여 마을주변 등 소규모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도 지원합니다.
- 경관작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대상지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다음연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한 경관작물재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16)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금리 인하 및 지원조건 변경

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 02-500-2171

〈농림사업시행지침 : 2008년부터 시행〉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대출금리 인하	○세 가지 금리로 운영 - 주거환경개선자금 : 3.45% - 주택정비자금 : 농업인3%, 비농업인 4%	○농업인일 경우 3%로 통일 - 주거환경개선자금 : 3% - 주택정비자금 : 농업인3%, 비농업4%
○지원 대상 주택 규모 제한	○농어촌주택정비자금 이용 시 대출대상주택의 면적제한이 없었음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원

〈내용해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중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 시 용자금리를 기존「3.45%」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 현행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용자금리를 3.45%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택개량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환경개선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금리를 3%로 인하하였습니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중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용 시 용자금 지원 대상주택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던 것을「150㎡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2008년 12월 31일 시한)에 의거 100㎡ 이하로 규정

(17) 종자관리제도 개선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과 ☎ 02-500-1793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008. 2. 4. 시행예정〉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보상금	○연간수입금에 따라 처분보상금이 다름	○연간수입금에 상관없이 50/100으로 통일(발명진흥법 준용)
○종자관리사 자격기준 완화	○종자기사 및 산업기사는 과거 유사경력 미 인정	○종자기사 및 산업기사도 과거 유사경력을 인정
○종자업 등록기준 완화	○육묘업 농가도 종자업 등록 시 종자관리사를 고용하도록 규정	○육묘업 농가에 대해서는 종자업 등록 시 종자관리사 고용의무를 제외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품종보호 권등록증 영문병기 및 영문등록증 신설	○종자업등록 시 채소종자는 포장을 입차하여도 되나 그 외 타작물은 입차가 되지 않음 ○한글 품종보호등록증만 발행	○채소 외 타작물에 대하여도 포장 입차가 가능하도록 입차조항 신설 ○영문병기 및 별도 영문등록증 신설(나라휘장 사용)

<내용해설>

-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보상금을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원직무발명처분보상금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대상자에게 과거경력력을 인정하여 주므로 자격취득이 쉬워지도록 하였습니다.
-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중 채소외의 다른 작물에도 입차 장비 인정하고 육묘업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단서 규정 신설하여 종자업 등록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 한글등록증 상에 영문병기 및 별도의 영문등록증 신설하므로 해외출원 증가와 글로벌화에 부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8)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 등 강화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채소특작과
(☎ 02-500-1898)

<인삼산업법 : 2008. 1. 14.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삼종별 제조기준이 다름에도 삼종별 구분 없이 연간 제조실적이 5톤 이상인 경우 자체검사업체 신청 가능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삼종별로 구분지정 - 지정 기준 : 홍삼·백삼은 3톤(본삼류 2톤 이상 포함)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
○자체검사업체 검사원 교육의무 미설정	○검사원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체검사업체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내용해설>

- 인삼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하여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인삼류는 삼종별로 제조방법 및 검사기준이 다르므로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을 삼종별 구분 지정토록 하여 자체검사업체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개정하였으며,
- 자체검사업체 검사원간 안목 통일 등 검사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사원의 교육을 의무화 하였고 자체 검사업체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사와 관련된 자료보관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기준 및 검사원 교육 의무화를 강화함으로써 고려인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제고로 인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 법률안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9) 인삼류 자체검사 대상 확대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채소특작과
(☎ 02-500-1898)

<인삼산업법 : 2008. 1. 14.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체검사업체는 수삼을 원료로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만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	○수출용인 경우 직접제조하지 아니한 홍삼·백삼·태극삼에 대하여도 자가 상표를 붙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

<내용해설>

- 수출용 인삼의 경우 인삼류 자체검사가 직접제조하지 아니한 홍삼·백삼·태극삼에 대하여

도 자가 상표를 붙이고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수출의 경우 바이어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고 도 자가 제조한 물량 부족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인삼류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 수출용에 한해 자신이 직접 제조한 것 이외의 인삼류도 자가 상표를 부착, 검사·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검사업체의 검사 책임성 제고와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삼산업법 개정 법률안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 원예자조금의 목적 기금화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채소특작과
(☎ 02-500-186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자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정부 대응 보조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자조금 규모화를 위해 2007. 7. 4. 이후 적립 이월한 자조금에 대해 2008년 사업 추진시 정부대응 보조 가능

<내용해설>

- 2008년부터는 원예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자조금 사업 시, 전년도로부터 이월·적립된 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대응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원예자조금은 재원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당해 연

도에 거출한 자조금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품목별 자조금 단체가 당해 연도에 거출한 자조금을 당해 연도에 소진시키기 위해 효과가 낮은 사업을 연내에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자조금은 회원에게 반납하고 재 거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차년도로 이월·적립된 자조금에 대해서도 정부보조가 가능토록 변경함으로써, 자조금 단체는 필요시 적량의 사업을 추진하고 미집행 자조금은 적립하여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자조금은 소비촉진, 시장개척, 수급조절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농안법)

(21)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농림부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소비안전과
(☎ 02-500-184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규>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도입 추진

<내용해설>

-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공급을 위해 2008년부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 2008년도 도입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2013년까지 저온유통 품목을 취급하는 규모화된 조직 96개소를 선정·육성하게 됩니다.

- 2008년도 신규 예산 : 30억원(국고)
 - ※ 지원조건 : 국고 40~50%, 융자 30%, 지방비 50%, 자부담 30~50%
- 저온유통 처리 유통비중 확대 : (2006) 11% → (2013) 20%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산지에서 예냉 등 수확 후 관리를 실시하고, 저온수송 및 배송 등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저온 일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2)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

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2-500-1911)

〈농림사업시행지침 : 2008년부터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신규〉	○낙농체험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 게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 개선비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무이자 융자지원

〈내용해설〉

- 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낙농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낙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산 현장인 목장에서 우유의 위생·안전성의 신뢰확보를 통한 우유 소비촉진을 위해 낙농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낙농체험관광목장으로 선정된 농가에는 체험시설 설치비, 환경 개선비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등에 대해 무이자 융자로 지원됩니다.
 - ※ 2008년도 사업지원 개소 수 및 금액 : 4개소, 400백만원(개소 당 100백만원)
 - ※ 지원조건 : 융자 100%(무이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기존 농촌체험과는 차별화된 낙농체험 프로그램

램 운영을 통해 도시 소비자의 체험관광 수요를 충족하고, 가축방역 또는 낙농환경 미비로 인해 패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낙농목장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험현장으로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축산 및 낙농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 변경

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02-500-1940)

〈가축전염병예방법 : 2008. 2. 4. 시행〉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 - 제2종 가축전염병중 피해가 적어 정부 방역 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을 제3종으로 변경하여 농가 자율방역 유도 - 소 유행열, 소아까바네,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부저병(5종) ※ 시행규칙 내 제2종 가축전염병중 13종을 제3종으로 재분류 예정
○돼지콜레라 등 인체 질병과 유사한 병명 사용	○돼지콜레라는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콜레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부루세라병은 “브루셀라병”으로 변경

〈내용해설〉

-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과 제2종에서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중 피해가 적어 정부 방역관리 필요성이 낮은 질병을 제3종으로 변경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대상 가축전염병 :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닭 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부저병(5종)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내 제2종 가축

전염병(18종)중 13종을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대상 가축전염병 :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 소렙토스피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닭전염성F낭병

■ 인체 질병과 유사한 병명으로 인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질병 명칭 및 인체 질병명

과 서로 달라 통일이 필요한 가축전염병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인체 질병과 유사한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인체 질병과 질병명이 서로 다른 소 부루셀라병을 “소 브루셀라병”으로 질병 명칭을 통일시켰습니다. ㉞

〈출처 : 농림부홈페이지〉

4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꿋꿋하게 맥을 이어온 40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동지 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 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동지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동지 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067-01-224657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이렇게 수립하였습니다

대책수립 경과

- '07. 6. 28 : 협상타결 이후 3개월간(4~6월)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대책 발표
- '07. 11. 6 : 6.28대책 외에 농업인 단체 등 추가요구를 반영·보완 발표
 - 10. 29 경제정책조정회의, 11. 6 국무회의의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

보완대책 주요 골자

- 품목별 취약부분을 보완 경쟁력 향상
 - (축산) 시설 현대화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 (원예)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산지 생산·유통 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고 품질경쟁력 제고
- 본격적인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 농가등록제를 바탕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10)
 -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 고령농 경영이양 지원
 - 식품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화 도모
-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농업인 개발사업 참여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도축세 폐지,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농지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시·도지사의 농지전용권한 확대(20→50ha)등
- 급격한 수입증가 가능성에 대비, 피해보전직불, 폐업지원 등 단기적 피해보전제도 지속운용

재정 지원 계획

- 보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0년간('08 ~ '17) 총 20.4조원 투융자
- 119조원 투융자 계획('04 ~ '13)은 한미FTA 대책을 반영,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3.9조원을 증액



문의처 : 농림부 국제협력과 황인식 서기관 02-500-1715
 농림부 농업정책과 송남근 사무관 02-500-1658